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922

발의연월일: 2022. 10. 26.

발 의 자:김민석·강득구·강선우

고영인 · 김성주 · 김수홍

문진석・박 정・신동근

양정숙 • 이은주 • 정춘숙

조응천 · 최종유 · 최혜영

홍정민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 제9조에서 금역구역을 지정하면서 초·중학교의 경우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다르게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의 경계선으로 1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.

이에, 초·중학교에 대해서도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초·중학생을 흡연으로부터 보 호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6항제3호 신설). 법률 제 호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(일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	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	6
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	
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	
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	
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	
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금연구역	
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	
하여야한다. 이 경우 금연구역	
안내표지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	
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	
다.	
1. • 2. (생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
	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
	<u>10미터 이내(일반 공중의 통</u>
	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
	말한다)
⑦ ~ ⑨ (생 략)	⑦ ~ ⑨ (현행과 같음)